HOBAN SUMMIT 송파 I

위례신도시 A1-2BL 호반 써밋 송파 I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9. 12. 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12.20.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며,「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아파트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 2에 의거 투기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본 주택은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해당 지구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가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서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거주한자(2018.12.20.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우선 공급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2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로서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 · 시행되어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제4조 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 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 · 당첨 · 계약 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20.)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외국에 거주한 기간 제외)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지역으로 청약 신청 시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거주 기간에서 제외되는 해외거주 인정기준
①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제도악용을 막기 위해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로 재출국시 계속 해외 거주로 봄)
②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
☞ 해당기간(①,②) 동안 국내 거주로 불인정되어 해당 주택 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불가 합니다.
☞ 단순 3개월 미만의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가능 합니다.

■ 적용사례
①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자 ☞ 해당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가능 합니다.
②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해당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가능 합니다.
③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불가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본인과 세대원 포함),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단, 주택형 전용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8항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해당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나머지 25%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남은 주택은 1순위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순으로 각각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이 때 1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본 아파트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② 본 아파트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 또는「부동산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을 것
  ③ 본 아파트의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할 것
- 1주택자가 위 요건 중 ②에 따른 신고 또는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른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3항 제1호의3 참조). 또한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가점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유지되며,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변경되어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은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6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개편으로 인한 예외사항 외 청약자(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동일 공급유형으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각각 청약(특별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일반공급)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2순위로 청약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과거 5년 이내의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 각목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및 지역(직장 포함)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3호에 의거「투기과열지구 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및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재개발/재건축) 및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인가일부터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본 아파트의 당첨 또는 계약체결로 인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법령에 의거 조합원 분양신청 불가/ 현금청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계획승인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향후「주택법」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각호(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제47조 이전기관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 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부터 1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제7호 가목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 토지임대주택 – 당첨일부터 5년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 사실 등) 조회 방법 : 본 주택에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 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당첨 사실 조회 및 청약 제한사항을 미리 확인하시어 부적격 당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 당첨제한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모든 지역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 신청금 → 청약통장으로 신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가점제 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또한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 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
- 주택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에 필요한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에 따른 우선공급에 있어 당해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간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 일반공급 주택 :「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거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8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주택법」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단, 대출제한 사항은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중도금대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금융공사 등)의 중도금 대출 보증규제(분양가 9억원 초과)대상으로 중도금대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을 통한 중도금 집단 대출은 불가합니다.
- 상기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는 보증기관의 중도금 분양보증 규정에 의거한 사항이며, 본 아파트의 옵션계약(마이너스옵션 계약 등) 선택 여부에 따른 계약자의 총 취득가액과는 무관함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계약자의 중도금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알선을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조달 불가로 인한 이의제기 및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상기 계약자가 스스로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신용대출 등의 대출금을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수분양자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에 따른 제반비용(보증수수료, 인지대) 등을 부담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하층을 희망하여 청약 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다만, 아래 대상자 사이 경쟁이 발생할 경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 최하층이라 함은 1층 또는 1층이 없는 경우의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최하층의 분양가격이 그 위층의 분양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우선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신청자가 적은 경우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1. 분양권등 취득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공급계약–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계약일.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권등으로 보지 아니함
      가. 시행일('18.12.11) 전 공급계약된 건　나. 시행일 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된 건
      다. 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신청된 건　라. 시행일 전 관리처분계획승인(정비사업) 신청된 건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공급계약–준공후–분양권(입주권)", "전매–준공후–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주택으로 등기되므로 엑셀검색결과상 동일물건이 있는 경우 1주택으로 처리됨
  2. 분양권등 처분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색되어 나타났으나 증여, 경매, 공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 당사자가 소유했던 공급계약서에서 다른 사람에게 명도된 날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는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5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사업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서울특별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및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1순위		2순위				
	당해지역	기타지역	당해지역	기타지역			
일정	2019.12.26.(목) (08:00 ~ 17:30)		2019.12.27.(금) (08:00 ~ 17:30)		2020.01.03.(금)	2020.01.04.(토)~2020.01.08.(수) (10:00 ~ 16:00)	2020.01.14.(화)~2020.01.16.(목) (10:00 ~ 16:00)
방법	인터넷 청약		인터넷 청약		개별조회 (www.apt2you.com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사 홍보관 방문 제출	당사 홍보관 방문 계약
장소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일반 공급)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당사 홍보관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 2관 1층)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당사 홍보관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 2관 1층)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2018.05.28. 접수 분부터 적용)가 실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2항에 따라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으로 정해진 위 기간 동안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송파구 주거사업과 – 15319호(2019.12.1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 A1–2 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0~25층 10개동 총 68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2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민영 주택	2019000675	01	108.8119A	108A	108.8119	27.0776	135.8895	117.0879	252.9774	72.3581	507	507	32
		02	108.0459B	108B	108.0459	30.4446	138.4905	116.2637	254.7542	71.8487	72	72	3
		03	108.8109C	108C	108.8109	28.8954	137.7063	117.0869	254.7932	72.3574	110	110	5
합 계											689	689	40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주택형	구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대지비	분양가격 건축비	분양가격 계	계약금[20%] 1회(10%) 계약시	계약금[20%] 2회(10%) 2020-02-20	중도금[60%] 1회(10%) 2020-05-06	중도금[60%] 2회(10%) 2020-08-06	중도금[60%] 3회(10%) 2020-11-06	중도금[60%] 4회(10%) 2021-02-05	중도금[60%] 5회(10%) 2021-06-07	중도금[60%] 6회(10%) 2021-10-06	잔금[20%] 입주예정일
108.8119A	108A	507	1	21	543,007,000	359,493,000	902,50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180,580,000
			2	31	543,007,000	359,493,000	902,50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180,580,000
			3	32	543,007,000	364,093,000	907,1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181,500,000
			4	32	543,007,000	364,093,000	907,1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181,500,000
			기준층	391	543,007,000	368,593,000	911,600,000	91,150,000	91,150,000	91,150,000	91,150,000	91,150,000	91,150,000	91,150,000	91,150,000	182,400,000
108.0459B	108B	72	1	3	539,184,000	362,716,000	901,900,000	90,180,000	90,180,000	90,180,000	90,180,000	90,180,000	90,180,000	90,180,000	90,180,000	180,460,000
			2	3	539,184,000	362,716,000	901,900,000	90,180,000	90,180,000	90,180,000	90,180,000	90,180,000	90,180,000	90,180,000	90,180,000	180,460,000
			3	3	539,184,000	365,416,000	904,600,000	90,450,000	90,450,000	90,450,000	90,450,000	90,450,000	90,450,000	90,450,000	90,450,000	181,000,000
			4	3	539,184,000	365,416,000	904,600,000	90,450,000	90,450,000	90,450,000	90,450,000	90,450,000	90,450,000	90,450,000	90,450,000	181,000,000
			기준층	60	539,184,000	370,016,000	909,200,000	90,910,000	90,910,000	90,910,000	90,910,000	90,910,000	90,910,000	90,910,000	90,910,000	181,920,000
108.8109C	108C	110	1	5	543,002,000	359,498,000	902,50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180,580,000
			2	5	543,002,000	359,498,000	902,50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180,580,000
			3	5	543,002,000	364,098,000	907,1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181,500,000
			4	5	543,002,000	364,098,000	907,1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181,500,000
			기준층	90	543,002,000	368,698,000	911,700,000	91,160,000	91,160,000	91,160,000	91,160,000	91,160,000	91,160,000	91,160,000	91,160,000	182,420,000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홍보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선납 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108.8119A	108.0459B	108.8109C	비고
홍보관 등의 약식 표기	108A	108B	108C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관 및 카다록/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 및 동호수별 돌출발코니 유형 구분

구분			108A	108B	108C
표준형 (돌출발코니 없음)			• 1201동 1,2호라인 1~16층, 3,4호라인 1~3층 • 1202동 1,2,3,4호라인 1~3층 • 1203동 1,2호라인 1~16층, 3,4호라인 1~3층 • 1204동 2호라인 1~3층, 4호라인 2,3층 • 1205동 2호라인 1~3층, 4호라인 2,3층 • 1206동 1호라인 2,3층, 2호라인 1~3층, 4호라인 2,3층 • 1207동 1,2호라인 1~3층, 4호라인 2~13층 • 1208동 1호라인 2,3층, 3호라인 1~3층 • 1209동 1,2호라인 1~4층, 3호라인 1~11층 4호라인 3~11층 • 1210동 1,2호라인 2~10층, 3,4호라인 2,3층	• 1204동 1호라인 1~3층 • 1205동 1호라인 1~3층 • 1208동 4호라인 1~3층	• 1204동 3호라인 1~24층 • 1205동 3호라인 1~24층 • 1206동 3호라인 1~3층 • 1207동 3호라인 1~13층 • 1208동 2호라인 1~24층
침실2	개방형	2면 유리난간		• 1204동 1호라인 4,6,8,10,12,14,16,18,20,22,24층 • 1205동 1호라인 4,6,8,10,12,14,16,18,20,22,24층 • 1208동 4호라인 4,6,8,10,12,14,16,18,20,22,24층	
		3면 유리난간	• 1201동 3호라인 4,6,8,10,12,14층, 4호라인 5,7,9,11,13층 • 1203동 3호라인 4,6,8,10,12,14층, 4호라인 5,7,9,11,13층 • 1204동 2,4호라인 5,7,9,11,13,15,17,19,21,23층 • 1205동 2,4호라인 5,7,9,11,13,15,17,19,21,23층 • 1206동 4호라인 4,6,8,10,12,14,16,18,20,22,24층 • 1208동 1,3호라인 5,7,9,11,13,15,17,19,21,23층 • 1209동 1호라인 5,7,9,11층, 2호라인 6,8,10층 • 1210동 3호라인 5,7,9층, 4호라인 4,6,8,10층		
		CON난간	• 1202동 1호라인 5,7,9,11,13,15층 2호라인 4,6,8,10,12,14,16층 3호라인 4,6,8,10,12,14층, 4호라인 5,7,9,11,13층 • 1207동 1호라인 4,6,8,10,12층, 2호라인 5,7,9,11,13층		
	폐쇄형		• 1206동 1호라인 5,7,9,11,13,15,17,19,21,23,25층 2호라인 4,6,8,10,12,14,16,18,20,22,24층		• 1206동 3호라인 5,7,9,11,13,15,17,19,21,23,25층
침실3		1면(전면) 유리난간			• 1206동 3호라인 4,6,8,10,12,14,16,18,20,22,24층
	개방형	3면 유리난간	• 1201동 3호라인 5,7,9,11,13층, 4호라인 4,6,8,10,12층 • 1203동 3호라인 5,7,9,11,13층, 4호라인 4,6,8,10,12층 • 1204동 2,4호라인 4,6,8,10,12,14,16,18,20,22,24층 • 1205동 2,4호라인 4,6,8,10,12,14,16,18,20,22,24층 • 1206동 4호라인 5,7,9,11,13,15,17,19,21,23,25층 • 1208동 1,3호라인 4,6,8,10,12,14,16,18,20,22,24층 • 1209동 1호라인 6,8,10층, 2호라인 5,7,9,11층 • 1210동 3호라인 4,6,8,10층, 4호라인 5,7,9층	• 1204동 1호라인 5,7,9,11,13,15,17,19,21,23층 • 1205동 1호라인 5,7,9,11,13,15,17,19,21,23층 • 1208동 4호라인 5,7,9,11,13,15,17,19,21,23층	
		CON난간	• 1202동 1호라인 4,6,8,10,12,14,16층 2호라인 5,7,9,11,13,15층 3호라인 5,7,9,11,13층, 4호라인 4,6,8,10,12층 • 1207동 1호라인 5,7,9,11,13층, 2호라인 4,6,8,10,12층		
	폐쇄형		• 1206동 1호라인 4,6,8,10,12,14,16,18,20,22,24층 2호라인 5,7,9,11,13,15,17,19,21,23,25층		

※ 본 아파트는 위례신도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지침 및 단지 외관 특화 적용 단지로 주택형별 일부세대에 외부 돌출형 발코니가 설치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돌출형 발코니가 설치된 타입은 표준형 타입에 비해 거실, 침실2, 침실3, 알파룸 등이 확장시에 300~400mm 짧게 설치됩니다.(타입별 상이)
- 청약신청시 타입별 신청만 가능하며, 돌출형 발코니 유무 및 유형에 따른 신청 구분은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계약자는 상기 돌출형 발코니 설계 및 시공 여부를 사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제기 및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송파구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본 아파트 전세대 전용 85㎡ 초과)된 금액임.
- 발코니는 전 세대 비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형은 추가 선택품목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할 수 있음.(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 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합계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공급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이후 도래하는 최초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연체료 납부 시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및 유상옵션대금(2차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 은행 전산망 장애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일 은행 업무 시간 내 납부를 권장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 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본아파트는 중도금대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금융공사 등)의 중도금 대출 보증규제(분양가 9억원초과)대상으로 중도금대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을 통한 중도금 집단 대출은 불가하고,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계약자의 중도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알선을 하지 않으므로,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인 조달 불가로 인한 이의제기 및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 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20.) 현재 서울특별시에 연속 1년 이상(2018.12.20.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세대주(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24개월)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1순위 청약 가능) ※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 바람.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청약 전 반드시 아파트 투유(www.apt2you.com)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요망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 제한 주택[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가목 및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기 분양주택 당첨 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청약접수 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 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 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추첨제)이 분류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에 의거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됨. 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하며 동일세대에서 중복 청약하는 경우는 부적격 처리함.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 인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 요건 관련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 : 큰 주택규모 청약 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부금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저축 변경 : 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 폐지(2017.04.03. 이후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지역 간 전입 : 모집공고 당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 시 1순위 청약접수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 : 모집공고 당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세대주 변경 : 모집공고 당일까지 세대주 변경 시 1순위 청약접수 가능함 ※ 당해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1순위 당해지역 거주자 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해당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함.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산정 시 서울특별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서울특별시 관내 행정구역으로 전입한 경우(예:서울특별시 → 하남시 → 서울특별시)에는 새로 전입한 일자부터 산정하여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야 함.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 간 예금금액 차액 발생 시 청약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재당첨 제한(2순위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자격 제한의 적용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 제한(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제한 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 주택	1순위	85㎡초과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가점제 50%, 추첨제 5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함.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한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는 제외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서울특별시 (1년 이상) / 경기도 ·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1년 미만)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 (2순위로 청약 가능) – 주택종합저축(청약예금 · 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 기준 금액에 충족하지 않은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전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 ·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청약제한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2순위 청약 불가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관련)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8호 [별표1] 1호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 · 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 · 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위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함(동 규칙 제2조 제7호의3).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③ 입주자저축가입 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신청자 본인은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동 · 호수 선정 방법

구분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해당 주택 건설지역(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 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함. • 가점제 당첨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2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라 만65세 이상자,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함. 단, 최하층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음.)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합니다.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됨. •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한다) 유지됨.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9.12.20.)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 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 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청약 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다른 주택에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구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적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 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검색 및 판단 대상은 청약 신청자 본인과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전원입니다.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2순위 청약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III　청약신청 방법

▣ 일반공급 청약 방법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 접수일 및 접수시간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서울특별시(1년 이상) / 경기도 ·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1년 미만)	2019.12.26.(목)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국민은행을 제외한 청약 참가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KB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아래 "인터넷 청약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2019.12.27.(금) 08:00~17:30	

※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는 1순위 당해지역에 청약이 가능하며,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는 기타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으로 접수해야 함 (타지역 청약 접수시 부적격 처리됨)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됨

▣ 일반공급 인터넷 청약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 일반공급 인터넷 청약 접수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가능함. (청약 신청 가능시간 08:00~17:3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kB 국민은행(KB 국민은행 청약자)
• PC 청약 시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APT청약신청」⇒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스마트폰 청약 시 :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APT청약신청」⇒「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PC 청약 시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인터넷청약」⇒「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스마트폰 청약 시 :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주택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 ·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순위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 (청약접수 가능 시간 09:00~16:00)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부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IV　당첨자 발표 및 당첨자 서류검수 일정

▣ 당첨자 발표 및 서류검수 일정

구 분	당첨자 및 동호수발표	당첨자 사전 서류 검수 일정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포함)	– 일시 : 2020.01.03.(금)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또는 APT2you앱에서 개별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기간 : 2020.01.04.(토) ~ 2020.01.08.(수) (10:00~16:00) – 장소 : 당사 홍보관(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 2관)

※ 당첨자 명단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 · 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홍보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 · 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홍보관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 유지됨.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세대 발생 및 소명 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 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미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 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홍보관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함.(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 정당당첨자인 경우에도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 분리세대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상기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음.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홍보관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또는 APT2you 앱(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1.03.(금) ~ 2020.01.12.(일) (10일간)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조회」⇒「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ARS)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서비스 종료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특별공급 제외)	
	제공일시	2020.01.03.(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제출 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분	제출유형 필수	추가 (해당자)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무주택 서약서	–	당사 홍보관에 비치, 무주택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	1주택 실수요자 주택 처분 확약서	–	당사 홍보관에 비치,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추첨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당사 홍보관에 비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순위로 당첨시
일반공급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기 초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1년 이상) ,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상기 초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제출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홍보관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사업주체는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V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1차 계약금 입금 후 정당계약일에 홍보관으로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계 약 일 정	계 약 장 소
정당당첨자 계약체결	2020.01.14.(화) ~ 2020.01.16.(목), 3일간, 10:00~16:00	당사 홍보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 2관

▣ 계약 시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지침에 의거 '해당 청약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무작위 추첨)합니다. 잔여세대 발생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하며, 이후 분양분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입주금 및 금융비용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 및 부양가족, 당첨사실 등 청약자격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홍보관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홍보관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제한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본 공동주택의 관계관청(교육청, 인허가청 등)이 요청 할 경우 해당 분양계약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공사진행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① 사업주체는 동 법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제출유형 필수	해당자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본인 계약시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자격검증서류	본인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서류검수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날인과 일치해야 함(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발급분에 한함.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에 '아파트 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 가능)
	○		계약금 입금증	본인	무통장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내역증(홍보관에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수납 일체 불가함)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발급분에 한함.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에 '아파트 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
	○		위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당사 홍보관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2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 및 계약 체결 이후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입금 예시 : 102동 103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20103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KB국민은행	393337–04–006681	㈜호반산업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2차 계약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분양대금 1차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2020.01.14.(화)~2020.01.16.(목)]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2차 계약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분양대금 중 1차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 됨)
- 상기 관리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자 대출 불가 안내

- 본 아파트는 중도금대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금융공사 등)의 중도금 대출 보증규제(분양가 9억원 초과)대상으로 중도금대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을 통한 중도금 집단 대출은 불가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계약자의 중도금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알선을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조달 불가로 인한 이의제기 및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계약자가 스스로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신용대출 등의 대출금을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수분양자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에 따른 제반비용(보증수수료, 인지대) 등을 부담하여야 함.

▣ 입주자 사전 방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에 의거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2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부대 ·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실내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외), 작은도서관, 근린생활시설 등

-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 됨)　• 상기 관리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4)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홍보관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입 주방가구 옵션 선택시 가스배관이 노출 시공되며, 상부 천장 몰딩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조주방 옵션 선택시 벽불이형 손빨래수전(냉,온)은 설치되지 않으며, 미설치로 인한 감액비용과 보조주방 선택옵션으로 인한 증가비용이 정산됨 금액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설치기준), 침실1,2,3(벽걸이형 설치기준)에만 설치 · 시공되며, 위치 이동, 추가 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개별적으로 가변형벽체 제거 및 변경 시 매립냉매배관 설치가 불가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 및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침실 복도 중문 설치 옵션 선택 시 냉매배관 위치는 설치 가능한 벽체로 이동되며, 계약자의 위치 이동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거실, 침실1,2,3)은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매립냉매배관(4개소)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입주자가 추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부세대 비확장시 천장단열재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및 침실 슬라이딩 중문 선택시 슬라이딩 도어 기능 및 설치 기준에 따라 도어와 복도 벽 마감 사이에 틈이 발생됩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천연화강석 마감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건축자재 라돈 저감 · 관리지침서에 따른 권고기준에 적합한 석종으로 시공 예정이나, 현장 시공 상황에 따라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8A : 현관 바닥–현대 칸스톤 킨드레드누보,디딤판–현대 칸스톤 아라미스, 부부욕실젠다이–롯데 래디언스 골드캐넌그레이 /108B,C : 현관 바닥– 현대 칸스톤 앰브로셜누보, 현관 디딤판–현대 칸스톤 블랙 스노우, 부부욕실 젠다이– 롯데 래디언스 골드캐넌그레이 기준)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멀티형 실외기 설치를 권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외기를 2단 설치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현관 옵션 선택시 에어샤워기, 에어브러쉬, 공기청정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며, 포터블(이동식 오염 감지 센서)이 지급됩니다　• 현관 옵션 미선택시 설치되는 일반 전열교환기는 주방렌지후드와 연동이 되지 않으며, 일반 환기 룸 컨트롤러가 설치됩니다.
- 수입가구 외 옵션 미선택시 설치되는 주방렌지후드는 전열교환기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현관 옵션(공기청정 전열교환기 시스템)과 수입가구옵션 모두 선택 시 렌지후드와 연동 가능합니다.
- 공기청정 시스템은 청정 모드(실내공기 순환모드)에만 고정필터(헤파필터)가 적용되며, 환기모드에는 일반 청정 필터가 적용됩니다.
- 수입가구옵션 외 선택시 3구 인덕션이 설치되며, 렌즈후드 상부장에는 누전차단기와 자동식 소화기(전기식)가 설치됩니다.(추후 쿡탑 사양 변경 시 자동식 소화기 호환불가)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미계약시 현관, 침실 등 칸막이 벽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플러스 옵션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주택법」제54조 제1항 제2호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 · 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 · 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거실(주방, 식당), 복도　〈타일, 화강석, 디딤석(걸레받이 포함)〉: 현관바닥 〈PVC류〉: 각 침실바닥　〈타일 및 재료분리대〉: 발코니, 욕실바닥	각실 바닥 미장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바닥 방수, 하향식 피난구 덮개
벽, 천정재	〈벽지 및 천장지〉: 현관, 거실, 주방, 식당, 복도, 침실　〈벽 및 천장 도장〉: 발코니 〈타일〉: 주방벽, 욕실벽, 인테리어 마감　〈기타〉: 몰딩, 우물천정	벽 :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천정(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조명기구	조명기구 일체	콘센트 및 스위치용 배관, 배선
욕실	욕실바닥 및 벽 타일(타일 시공을 위한 미장 포함),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천정재, 석재(인조대리석 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욕조, 코킹,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폰, 세면기, 양변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슬리브, 전기, 통신배관 배선
주방가구 및 기타사항	주방가구 :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TV, 주방벽타일, 주방수전(절수기 포함), 싱크볼, 음식물탈수기, 주방 자동식소화기, 가스쿡탑(3구), 렌지후드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가스), 소방관련시설, 전기 · 통신 배관/배선 (주방TV폰 등의 전기 입선), 주방 배기덕트, 세대환기(장비, 덕트)
일반가구	신발장, 붙박이장, 파우더장, 드레스룸, 펜트리 도어, 시스템 가구(선반류 포함)	없음
창호 및 기타사항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실외기실 플라스틱 출입창호, 발코니수전류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 발코니 도어, 하향식 피난구 도어, 현관카메라,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침실1,2,3) 하향식 피난구 : 바닥마감을 고려해 돌출되어 시공됨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108A	108B	108C
기본선택(마이너스 옵션 금액)	34,191,100	34,421,900	34,180,600

4)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 및 추가 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 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후 입주자 본인이 마이너스 품목에 대한 직접 시공으로 인하여 세대 하자 및 인접 세대에 대한 직간접 피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 및 재산상 손해 발생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이전인 경우 마이너스 품목 시공 또는 발코니확장 공사 등 일체의 개별적인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발코니 확장 등 세대 내 마감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마이너스 옵션 선택 계약체결 익일 이후 사용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이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 · 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당해 위례택지개발지구의 사업시행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서 향후 택지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본 주택 대지경계에 구조물 등이 설치 또는 변경 될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는 당해 지구가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서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근린공원, 소공원, 연결녹지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 · 확장 도로는 인 · 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폐기물시설, 열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및 체육시설(골프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신교통수단(트램) 및 위례~신사선, 위례중앙역은(가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종합발전 방안 계획에 따라 안내한 것으로 관계기관 등의 계획에 따라 사업여부 및 일정 등이 변경, 연기,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이에 사업주체(임대인)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진행여부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위례신도시 및 제반 기반시설(휴먼링, 트랜짓몰, 근린공원, 광장, 위례중앙역(가칭), 신교통수단(트램), 수변계획 등)의 개발계획은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에 의한 것으로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연기,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 시공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그 진행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음.　• 위례신도시 내,외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집단에너지시설, 변전소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될 계획임.
- 단지 주변에 공원이 설치될 예정이며,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으로 소음 및 냄새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아파트 단지 주변의 학교, 공공공지, 공개공지, 공원 등의 레벨은 관계기관의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당해 아파트 옹벽 및 산벽, 조경석의 높이 및 재질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동측 완충녹지와 면한 외곽 부분은 관계기관의 완충녹지 실제시공 레벨에 따라 옹벽, 산벽 등으로 계획되거나, 단순 마운딩(둔덕)처리가 될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음.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의 신축 · 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음.
- 본 사업부지 외부의 학교, 공원, 완충녹지, 연결녹지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향후 계획(안)을 구현한 것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관련기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자체 관할로 변경 될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함.
- 당해 지구 내 학교시설, 공원시설 및 지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시 조정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학교,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의 위치 ·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람.
-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일부 보류 · 취소 ·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 · 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홍보관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 홍보 유인물(사이버 홍보관,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 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 · 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에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음.
- 서측 근린공원 레벨이 아파트 단지 레벨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단지 측면부 일부 조경석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음.
- 서측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접함으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 통행, 교통장애 등 생활 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근의 초등학교 예정부지와 레벨차로 인해 계단 등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초등학교 설치계획 및 협의결과에 따라 연결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학교 관련 사항

- 초중학교 배정은 향후 교육지원청 결정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며, 사업주체나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님.
- 서울특별시는 평준화지역으로 고등학교의 일반고, 학군 학생 배정방법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정책에 따라 진행함.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관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사업 추진 현황 변동(취소, 해제 등), 세대수 변경, 사업추진의 장기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와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 정책 추진에 따라 학생배치계획 등 변동 될 수 있음.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설 예정 학교 위치 및 개교 시기의 미정으로 원거리 통학이 예상되며, 향후 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개교전 까지 송파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통학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임.

▣ 단지 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카탈로그 등) 및 홍보관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 · 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 · 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홍보관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건축법」및「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 보수 ·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 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등의 설치로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모형을 확인하여야 함.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동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 유지 ·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동 옥상의 형태는 평지붕으로 본 공사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마감은 1~3층 석재 마감 적용 예정이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의 실외기는 외부 또는 지붕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세대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변동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계약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주계획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경관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2개동 조닝하여 1개소 설치 예정이나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디자인 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지하주차장은 지상 램프 2개소에서 진출입 가능하며, 지하1층~지하3층 지하주차장은 전체동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임.
- 지하 1층 주차장 진입 및 주행유효높이는 최대 2.7m로 1Ton미만의 택배차 진입은 가능하나 대형화물차, 사다리차 등의 진입이 불가능함.(지하 2층 및 지하 3층 주차장의 주행유효높이는 2.3m)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본 주택은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임.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세대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정은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지침을 반영하여 단지 남측에 차량 진출입구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이로 인한 차량통행에 의해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문주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1210동)의 이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내 비상차로 경사도는 주변현황 및 추후 인 · 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측벽부 지상에 위치하여 아파트 진출입로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 레벨차에 따라 단지내 단차가 발생되며, 내/외부에 옹벽이 설치되어 일부동은 통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저층부 세대 시야가 간섭될 수 있음.
- 1210동 전면에 근린생활시설 설치로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상가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1210동 전면에 근린생활시설 이용 및 외부 통과동선 설치로 이용에 따른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1201동 전면에 어린이집 설치로 사용 소음 및 저층세대 시야가 간섭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는 1201,1209,1210동 인근 2개소 설치되어 차량이동에 따른 소음, 불빛 등의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1201,1202,1206,1207동 인근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로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1207,1208동 인근 경로당이 위치하여 사용 소음 및 시야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1208동 전면 지하에 커뮤니티센터 선큰 설치로 이용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의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며, 1202동, 1208동 하부에 커뮤니티 센터가 설치되어 골프연습장 타격음, 음악에 따른 진동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202,1208동 주변 옥외 승강기 사용에 따른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1201,1209,1210동은 단지배치 구성에 따라 차량 진출입 도로에 인접해 있어 차량 이동에 따른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1210동 전면에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설치되어 차량사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1201,1209,1210동은 단지 주출입구에 문주 설치로 통행, 시야, 불빛 등의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지하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커뮤니티시설 출입은 지상 썬큰 및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함.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 휴게공간,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등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주동별 소방 급기용 D/A가 1~2개소 설치예정으로 일부세대 침실측면 및 필로티 등에 설치되며, 크기 높이 등은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각지자체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조례 및 관할 부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예정임.
- 단지 옥탑에 TV공청 안테나(1개소, 전파방향기준) 및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1201,1207,1208,1210동 지붕층)/중계설비(1202,1205,1206,1209동 지하2층 휀룸)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소방법 및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주차장 썬큰)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일부 동의 전 · 후 · 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의 냉난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 및 지붕에 노출되어 통행 및 세대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위치, 형태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 편의를 위해 지하1층에 설치함.
- 여성우대주차 및 전기차 주차공간은 지하1~지하3층까지 분산배치 되어 있음.　• 주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 외부 높이차에 의해 일부 조경석 또는 옹벽이 설치될 예정임
- 단지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조화 고려 및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구할 수 없음.
- 당해지구 내 · 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홍보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상가동 건물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보행자 출입구 설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공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1208동 3, 4호 전면에 하부 부대복리시설 계단실 및 옥외 승강기가 설치되어 저층세대 시야 간섭 및 조망에 제한이 있으며 사용에 따른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1209동 4호 하부 필로티는 단지내 주 이동 통로로 이용되어 이용에 따른 간섭 및 소음등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동별 설치된 쓰레기 분리수거장 위치에 따라 악취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1204동 2/3호, 3/4호 전면, 1206호 1호 전면, 1209호 2호 전면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로 실내에서 보일 수 있음.

IX　설계 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돌출형 노출 발코니에는 별도의 급수설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빗물유입시 외부로 유출이 가능하도록 시공되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돌출형 발코니로 출입가능한 곳에 설치되는 창호에는 수동 잠금장치가 설치됨.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 · 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는 비닐계 장판으로 시공됨
  – 주방가구(싱크대)제외한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됨.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샤워부스 바닥에는 제외됨.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단위세대 코어 및 인접세대 형태에 따라 창이 동 깊숙히 위치하고 있어 채광 및 환기가 불리할 수 있음.
- 세대 발코니 내 하향식 피난구에는 화재시 아래층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세대 발코니 천장에 윗층 세대의 피난시설이 설치됨.　•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일부세대에 돌출발코니 및 돌출 슬라브 등의 설치로 일부세대 음영 및 조망이 간섭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의 저층부는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이 위치하거나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공급카탈로그 및 홍보관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홍보관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각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108C형의 침실3/현관, 108A형 일부세대 욕실은 엘리베이터에 접해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어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침실 등이 엘리베이터 샤프트나, 계단실에 인접한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IoT 플랫폼 서비스는 세대 내 입주민의 무선인터넷(고객 별도 설치) 사용시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 인터넷 미 사용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함.
- 사물인터넷(IOT)서비스는 카카오와 제휴한 서비스로 성능개선 및 기술개발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사물인터넷(IOT) 연동은 가전제품에 따라 연동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입주시점부터 10년간 무상 지원 후 유상으로 변경되며 또한 음성인식스피커(별도구매품)는 입주시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무선AP는 거실 1개소에만 설치되며 세대 구조 및 거리에 따라 무선 성능 저하 및 무선 접속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본 주택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홍보관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홍보관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테라스 세대 테라스에는 수전이 설치되지 않음.
- 각 단위세대는 동일 타입의 경우에도 주거동별, 층별로 발코니면적(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개방형발코니의 위치가 상이하므로, 계약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람.
- 개방형 발코니 난간의 형태 및 재질은 각 단위세대 타입별, 주거동별 상이하므로, 계약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람.
- 108A형 돌출형 발코니 설치 세대의 경우 발코니 면적 조정에 따라 표준형 세대의 거실, 침실2, 3 대비하여 발코니 길이가 짧고 확장시 거실, 침실2,3 깊이가 300mm 짧게 시공됨.
- 108B형 돌출형 발코니 설치 세대의 경우 발코니 면적 조정에 따라 표준형 세대의 침실2, 3 대비하여 발코니 길이가 짧고 확장시 깊이가 침실2,3 400mm 짧게 시공됨. 돌출형 발코니 설치세대의 침실2 기둥은 단열재 설치에 따라 표준형 대비 두껍게 시공됨.
- 108C형 돌출형 발코니 설치 세대의 경우 발코니 면적 조정에 따라 표준형 세대의 알파룸, 침실2, 3 대비하여 발코니 길이가 짧고 확장시 알파룸, 침실2,3 깊이가 300mm 짧게 시공됨. 돌출형 발코니 설치세대의 알파룸, 침실2 기둥은 단열재 설치에 따라 표준형 대비 두껍게 시공됨.
- 단위세대 내부 구조는 서울시 건축심의 기준상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기준에 따라 기둥+건식벽 위주로 구성됨.　• 실외기실에 소방배관이 노출됨.
- 세면기 하부에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됨.　• 홍보관에 시공된 소방헤드는 홍보관 준공용 소방헤드이며, 본 공사시 위치 및 종류는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디자인에 따라 외부에 돌출 발코니 및 돌출 슬라브가 설치되어 있으나, 외부에서 이용할수 없는 구조임. 임의 사용에 따른 안전 및 분쟁사항은 입주자의 책임임
- 각 세대별 전면에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세대가 있어 환기 및 채광에 차이가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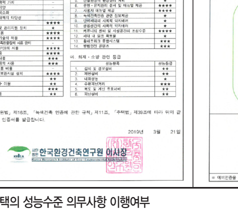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위례신도시 A1–2BL 공동주택
2. 신 청 자 : ㈜호반건설산업 대표이사 최승남
3.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신도시 A1–2BL
4. 성 능 등 급

2019년　3월　21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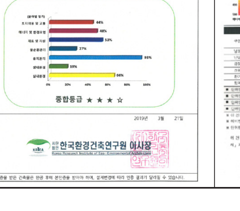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종합등급 ★ ★ ★ ☆

2019년　3월　21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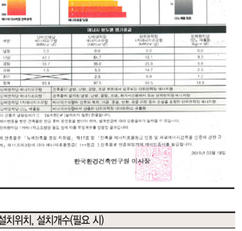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 · 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한 효율 이상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 사 명	㈜신동아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영광기술단	㈜이림기술단	㈜금라기술단
감리금액	2,833,884,900	491,095,000	214,600,000	17,400,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주택법」제57조 및「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 공시내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274,680,252,712	공사비	건축	용접공사	–	공사비	기계 설비	가스설비공사	612,389,000
		기간이자	34,546,816,084			조적공사	1,633,037,000			자동제어설비공사	251,237,000
		필요적 경비	13,711,921,967			미장공사	3,014,838,000			특수설비공사	409,736,000
		그밖의 비용	18,623,508,360			단열공사	2,048,677,000			공조설비공사	1,379,442,000
계			341,562,499,123			방수 · 방습공사	1,502,364,000			기계공사 계	11,304,760,000
공사비	토목	토공사	4,242,651,000			목공사	2,732,197,000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8,604,850,000
		흙막이공사	–			가구공사	2,292,742,000			정보통신공사	5,275,967,000
		비탈면보호공사	–			금속공사	2,904,922,000			소방설비공사	5,558,607,000
		옹벽공사	–			지붕 및 홈통공사	–			승강기공사	1,488,705,000
		석축공사	–			창호공사	3,109,052,000			그 밖의 공종 계	20,928,129,000
		우 · 오수공사	863,626,000			유리공사	1,350,396,000		그 밖의 공사비	일반 관리비	11,839,519,000
		공동구공사	–			타일공사	2,669,387,000			이윤	8,604,849,00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돌공사	3,171,860,000			그 밖의 공사비 계	20,444,368,000
		도로포장공사	910,733,000			도장공사	1,648,740,000	계		계	153,650,036,00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도배공사	1,271,885,000	간접비		설계비	1,222,287,000
		정화조시설공사	–			수장공사	3,234,669,000			감리비	3,556,979,900
		조경공사	3,878,463,000			주방용구공사	1,287,587,000			일반분양시설 경비	7,129,747,000
		부대시설공사	2,101,939,000			잡공사	3,646,642,000			분담금 및 부담금	689,000,000
		토목공사 계	11,997,412,000			건축공사 계	88,975,367,000			보상비	–
	건축	공통가설공사	4,428,043,000		기계 설비	급수설비공사	1,366,098,000			기타 사업비성 경비	53,985,538,898
		가시설물공사	879,328,000			급탕설비공사	1,366,098,000	계		계	66,583,552,798
		지정 및 기초공사	2,543,769,000			오배수설비공사	1,852,869,000	그 밖의 비용		그 밖의 비용	65,163,912,079
		철골공사	–			위생기구설비공사	1,114,862,000	합 계		합 계	626,960,000,000
		철근콘크리트 공사	43,605,232,000			난방설비공사	2,952,029,000				

※ 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의거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구분		금액(원)	비고
택지비	택지비가산비	66,882,246,411	택지대금에 대한 가산이자, 제세공과금 및 등기수수료,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필요적경비
건축비	건축비가산비	65,163,912,079	구조형식 가산비(지상층), 녹색건축, 법정초과 복리시설, 인텔리전트설비 공사비(홈네트워크, 에어컨냉매배관, 초고속통신특등급, 기계환기설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법령 및 조례등 제개정에 따른 가산비(소화내진설비, 손끼임 방지장치, 지하층 층고 추가, 저층부 석재, 외관특화,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분양보증수수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위례신도시 A1–2블록 호반 써밋 송파1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5612019–101–0009400호	오천일십오억일천이백팔십팔만원정 (₩ 501,512,88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